【평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2호】

2022년도 제2회 평창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2회 평창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5.

평 창 군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1·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9급	시설	일반토목	10명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10:00~11:00)
9급	시설	건축	5명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60분 (10:00~11:00)

2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2022. 1. 5. ~ 1. 25.(20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2. 1. 26. ~ 1. 28.(3일간)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1차·2차 시험 병합실시)**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 시 자 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21. 6.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자격증 제한(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1. 26(수) ~ 1. 28(금) 09:00~18:00	필기시험	2. 7(월)	**2. 12(토)**	2. 16(수)
	면 접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26.(수) ~ 1. 28.(목),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장소 :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부서 (☎ 033-330-2234)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하여야 함.

❖ 우편(등기)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우편(등기)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33-330-2234)**,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 · 송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자는 평창군 수입증지(5,000원권) 인증 후 원서 제출(인증처 : 군청 민원과 1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⑤ 응시분야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원본지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⑧ 자격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지참

6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공통적용 가점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1.1.1.자로 폐지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할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2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하게 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평창소식)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033-330-2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